

# 청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1가단18727 손해배상(기)  
원 고 ○○○  
충북 청원군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한철  
피 고 ○○○○  
청주시  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 
변 론 종 결 2012. 7. 20.  
판 결 선 고 2012. 8. 17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2,479,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7. 21.부터 2012. 8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4,959,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○○에너지 주식회사(변경전 상호 : ◎◎에너지 주식회사, 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는 석유 및 엘피지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, 피고는 세무사로 2007. 4. 경부터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, 기장대행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.

나. 소외 회사의 주식 총 10,000주에 대하여, ◇◇◇이 4,900주, ◆◆◆가 3,000주, □□□이 2,000주, ■■■이 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, 원고는 2009. 6.경 ◇◇◇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원고가 주식양수(이하 '이 사건 주식양수'라 한다)를 통해 소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발생될 문제에 관한 세무상담을 받았다.

다. 위 세무상담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"가족을 소외 회사의 동업자로 하여, 가족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"에 관하여 물었고, 이에 피고는 '문제 없다'는 취지로 답변하였다.

라. 위 세무상담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△△△, ●●● 명의로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, 피고에게 100,000원을 지급하였으며, 이에 피고는 2009. 6.경 직접 원고와 ◇◇◇, △△△와 ◆◆◆, ●●●과 ■■■ 및 □□□ 사이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, 2009. 7.경 위 각 주식양도의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었다.

마. 피고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청원군 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4,959,630원(= 차량에 관한 부분 701,600원 + 부동산에 관한 부분 24,258,030원)을 부과받았고, 원고는 2011. 2. 28. 위 금원을 모두 납 부하였다.

바. 한편, 피고는 위와 같이 2007. 4.경부터 소외 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면서 비 용을 받지 아니하다가, 원고가 2009. 7. 1.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, 2010. 1. 경 소외 회사가 주유소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약 150,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7호증, 을 제1, 2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, 증인 ◇◇◇의 증언, 이 법원의 청원군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피고 본인신문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당사자들의 주장

#### (1) 원고의 주장

세무사인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원고는 위와 같이 부담하지 않아 도 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4,959,630원을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 게 되었는데,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식양수 관련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거나,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세무상담을 한 과실 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## (2) 피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설령 위임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.

#### 나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## (1) 위임계약의 성립 여부

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는 2007. 4.경부터 소외 회사의 세금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고, 이 사건 주식양수 역시 소외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된 일이었던 점, ② 세무상담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,000원을 교부받았고, 이후 이 사건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 주었던 점, ③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취임 이후 피고는 비용을 받으며 정식으로 소외 회사의 기장업무 등을 대행하였는바, 이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 상담의 대가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. 6.경 이 사건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봄이 상당하다.

##### (2)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

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, 세무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수입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

사이에 다툼이 없고,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제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한편, 피고의 위와 같은 인과관계 부존재, 즉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를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,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여부를 떠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를 가족명의로 할 것이었다면 굳이 세무전문가인 피고에게 법적 조언을 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# 다. 손해배상의 범위

##### (1) 원고의 손해 범위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소외 회사의 동업자 및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원고가 가족을 주식양수인으로 정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4,959,630원이 부과되었으므로, 위 세금 상당액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할 것이다.

##### (2) 책임의 제한

다만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소액인 점, 이 사건 주식양수의 당사자인 원고는 피고의 상담내용만을 믿고 스스로 어떠한 검토도 해 보지 아니한 점, 원고와 피고의 관계, 부과된 세금 및 이 사건 주식양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책임을 50%로 제한함이 상당하다.

##### (3)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먼저,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본세 18,245,360원 부분은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체가 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피고는 다음으로, 2009. 7. 31.부터 2011. 2. 10.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위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것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,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던 동안의 세금액 상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# 라. 소결

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12,479,815원(= 24,959,630원 X 1/2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. 7. 21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선고일인 2012. 8. 1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수현